

일하는 부모를 위한 '6+6 부모육아휴직제' 따라잡기

'6+6 부모육아휴직제'란?

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월 상한액(단위:만원)

200
250
300
350
400
450







6+6 부모육아휴직제'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?

- ♥ 「고용보험법」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(단,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)가.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- ◆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
본인은 일반 근로자이고,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나요?

배우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근로자인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예시 1

) 공무원 ♥ 근로자(피보험자) 순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근로자가 본인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

증빙서류 제출

근로자에게 '6+6 특례 육아휴직급여' 지급

예시 2 근로자(피보험자) ♥ 공무원 순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

근로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🔷 이후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 증빙서류 제출

근로자에게 '6+6 특례 육아휴직급여'의 추가지급분 지급



'6+6 부모육아휴직제'를 적용받으려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2024년 이후에 최초로 사용해야 하나요?

- '6+6 부모육아휴직제'는 기존 '3+3 부모육아휴직제'를 확대·개편한 제도로.
 - 부모 모두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. 2024년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 지급요건(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)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에는 적용됩니다.

예시 1 자녀가 '22.8.15. 출생한 경우

첫 번째 휴직자 '23.10.15. ~ '24.6.14.(8개월) 사용 **두 번째 휴직자** '23.11.15. ~ '24.5.14.(6개월) 사용

→ '24.1.1. 기준, 자녀 연령이 개정법 지급요건에 충족되는 18개월 이내이므로 '24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'6+6 부모육아휴직제' 적용 가능







자녀가 2024년 이전에 출생했어도 '6+6 부모육아휴직제'를 사용할 수 있나요?

○ 2024년 이전에 출생했더라도 육아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3-1)

자녀가 2024년 이전에 출생했고,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날이 2024년 이전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?

○ 2024.1.1. 기준,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사용할 수 있으며 2024년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 '6+6 부모육아휴직제'가 적용됩니다.

예시 '

자녀가 '22.6.30. 출생한 경우

첫 번째 휴직자 '23.3.1. ~ '23.12.31.(10개월) 사용 두 번째 휴직자 '23.12.1. ~ '24.7.31.(8개월) 사용

→ '24.1.1. 기준, 자녀 연령이 18개월이 지났으므로 '6+6 부모육아휴직제' 적용 불가

4

'6+6 부모육아휴직제'는 부모의 육아휴직 기<u>간이 겹쳐야 적용되나요?</u>

- '6+6 부모육아휴직제'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간이 반드시 겹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.
 - 다만,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.
 - ◆ '6+6 부모육아휴직제'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

예시

자녀가 '23.12.1. 출생한 경우

첫 번째 휴직자 '24.1.15. ~ 5.14.(4개월) 사용 두 번째 휴직자 '24.3.15. ~ 8.14.(5개월) 사용

→ 부모 공통 사용기간은 4개월이므로 4개월간 적용







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?

-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면,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적용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
 - 따라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우선 ① 일반 육아휴직급여(월 상한액 150만원)을
 지급하고, ②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차액분(6+6 적용급여-일반 육아휴직급여)을 지급합니다.

예시

) '6+6 부모육아휴직제' 1개월을 적용받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

- - → 1개월분의 최대 상한액인 200만원으로 적용
- - ◆ 2,000,000-1,125,000=875,000원 추가 지급

6

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'6+6 부모육아휴직제'를 적용한 육아휴직급여 추가분을 지급할 때,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?

○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.







6+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사례



누모 중 한 명이 개정법 시행('24.1.1.) 이후 최초로 사용한 경우

→ 부모의 첫 6개월 급여에 대해 '6+6 부모육아휴직제' 적용



부모가 개정법 시행 전에 사용했으나,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

→ 부모의 육아휴직 첫 6개월 범위 내에서 '24.1.1.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 '6+6 부모육아휴직제' 적용





